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6고정30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 음란)

피 고 인 A

검 사 김규성(기소), 김민희(공판)

판 결 선 고 2026. 6.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디스코드 아이디 'B', C계정 '(이메일 1 생략)'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D(여, 26세)과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5. 7. 29. 12:00경부터 같은 날 13:30경 사이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가 운영하는 디스코드 대화방에 참여하여 '자지 보지 응디 섹스', '야 씨발년아 니 친정 엄마 씹구멍 찢으면 좋겠니' 등의 글을 수회 전송하고, 피해자의 이메일로 '운지운지섹스응디자지보지'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태양,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형과 부수처분의 내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 여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동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고, 이에 따라 신상정보의 등록을 전제로 한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경모 _____